

= 2018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최종)

2018. 3.

강원도립대학교

= 2018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최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교직원 실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역량 강화

《 관련법령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공립대학_강원도지사_교육법무과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⑤의 4.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강원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I

사업개요

○ 대 상: 총장, 전임교원, 조교

구 분	계	총 장	전임교원	조 교	비 고
인 원 수	45명	1명	30명	14명	

○ 사 업 비: 253,000천원

회계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당초예산)	비 고
	당초예산	최종예산		
예 산 액	306,000천원	253,000천원 (△53,000)	253,000천원	동결(전년예산대비) *재정건전성 유지

참고*대학회계 운영 원칙(법률 제12조)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평가기간: 2018. 1. 1. ~ 12. 31.(1년)

○ 평가영역 및 지표(배점) 구성

평가대상	평가영역(3개영역)	설 명
총 장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 대학전체 실적 평가 *학생지도강화
전임교원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 (개인 + 학과평가)
조 교	학생지도	▶ (학과평가) *행정조교_학과평균점수로 평가

(단위: 개, 점)

평가대상	영역별(평가지표수) 및 배점							
	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지표수	총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총 장	10개	100점	4	40점	2	20점	4	40점
전임교원	13개	300점	5	100점	4	100점	4	100점
조 교	4개	100점	-	-	-	-	4	100점

※ 전임교원의 경우 총점(300점)을 100점으로 환산

○ 지급제한

-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교직원
- 실적 인정기간 동안 연구년 및 장기 해외파견 중인 교직원
(연구년)
· 교육 영역 : 지급 제외
· * 단, 능력개발 6개월의 경우 그 외 기간에 계획서 및 실적물을 제출하면 비용 지급
· 연구/학생지도 영역 : 계획서와 그에 따른 실적을 제출 시 비용 지급
(장기 해외파견)
· 교육/학생지도 영역 : 지급 제외
· 연구 영역 : 계획서와 그에 따른 실적을 제출 시 비용 지급
-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된 교직원
- 휴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등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이 학기별 1개월 미만 또는 연구영역이 연간 2개월 미만인 교원

II 평가기준지표 강화 주요내용(2017학년도 대비)

대학발전(특성화)방향 및 교수중심의 역량강화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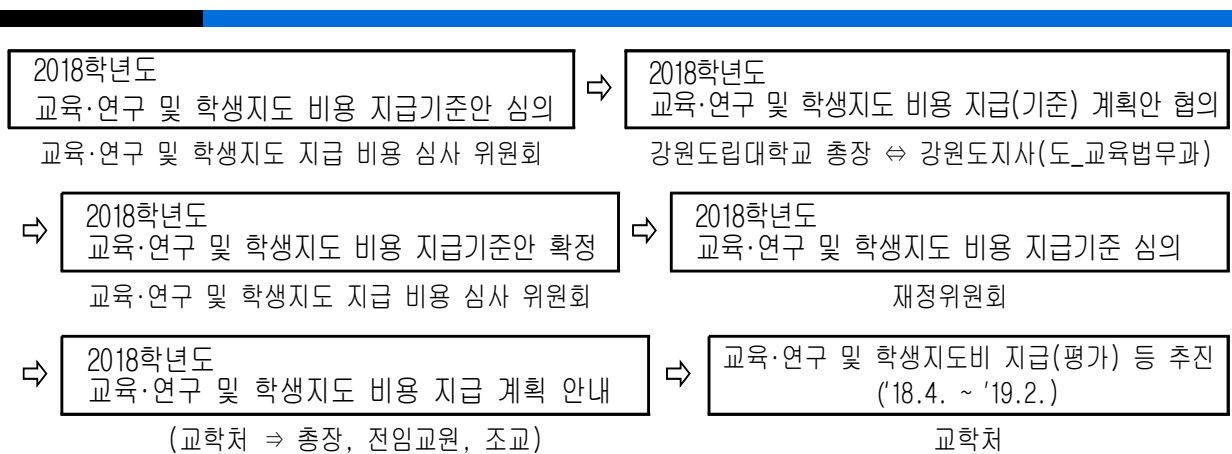
평가대상	평가기준(활동실적) 지표 강화 주요내용(일부요약)
총 장	학생지도영역_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취업활동 강화
전임교원	학생지도영역_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취업활동 강화(학과중심→교수중심)
조 교	*전임교원_학생지도영역 평가 연계반영

※세부내용_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평가기준(평가대상별)_붙임1-1 참고

Ⅲ 추진경과

- 2018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세출): '18. 2월
-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수립: 2.12.
-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의견수렴: 2.13. *교수회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안 심의(심사위원회): 2.14.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안 검토(도 교육법무과): 2.20.~ 27.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안 심의(재정위원회): 2.27.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및 계획 확정(심사위원회): 3.15.

Ⅳ 추진절차(요약)



V 향후계획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계획서 접수: 3.30.한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선급금(40%) 지급: 4월중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점검(7월) 및 실적보고서 접수: '19. 1월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평가 및 후(차등)급 지원: '19. 2월

- 붙임: 1.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 1부.
- 1-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평가기준(평가대상별) 1부.
 - 1-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기준 및 대책 1부.
 - 1-3. 2018학년도 활동계획서(서식) 1부.
 - 1-4. 2018학년도 실적보고서(서식) 1부.
2. 심사위원회 구성(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및 운영 현황 1부.
3. 관련법규 및 교육부 지침 주요내용(요약) 1부. 끝.

붙임: 1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

□ 평가대상(영역별) 총괄(소요)예산

(단위: 천원)

대 상	인원(명)	합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합 계	45	252,630	92,050	42,000	118,580
총 장	1	8,050 (100%)	8,050(100%)		
전임교원	30	210,000 (100%)	84,000 (40%)	42,000 (20%)	84,000 (40%)
조 교	14	34,580 (100%)			34,580 (100%)

□ 평가(등급별/영역별/단계별) 기준

등급별 인원 비율(%)	평가대상	인 원	S등급(20%)	A등급(60%)	B등급(20%)	C등급
	총 장	1명	1			
			* 절대평가에 의해 85점 이상 S등급, 75점 이상 85점 미만 A등급, 75점 이하 B등급			
	전임교원	30명	6	18	6	-
			* C등급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지급대상 제외, C등급인원은 B등급인원에 포함			
영역별 지급 비율(%)	조 교	14명	3	8	3	-
			* C등급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지급대상 제외, C등급인원은 B등급인원에 포함			
	구 분	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 고
	비율(%)	100%	40%	20%	40%	
단계별 지급 비율(%)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급비율	100%	활동계획 40%	실적보고 40%	활동실적 심사 20% *차등지급(0~20%)	

□ 1인당 지급 기준액 (평가대상별/영역별/등급별)

(단위: 천원)

구 분				S등급 (115%)	A등급 (100%)	B등급 (85%)	비고 (지급시기)
대상	영역	시기	방법				
총장	합 계			8,050	7,000	5,950	
	총괄 (100%)	선급	공통(40%)	2,800	2,800	2,800	'18.4월
		후급	차등(60%)	5,250	4,200	3,150	'19.1월
전임교원	합 계			8,050	7,000	5,950	
	교육 (40%)	계		3,220	2,800	2,380	
		선급	공통(40%)	1,120	1,120	1,120	'18.4월
		후급	공통(40%)	1,120	1,120	1,120	'19.1월
			차등(20%)	980	560	140	'19.1월
	연구 (20%)	계		1,610	1,400	1,190	
		선급	공통(40%)	560	560	560	'18.4월
		후급	공통(40%)	560	560	560	'19.1월
			차등(20%)	490	280	70	'19.1월
	학생 지도 (40%)	계		3,220	2,800	2,380	
		선급	공통(40%)	1,120	1,120	1,120	'18.4월
		후급	공통(40%)	1,120	1,120	1,120	'19.1월
			차등(20%)	980	560	140	'19.1월
조교	합 계			2,840.5	2,470	2,099.5	
	학생 지도 (100%)	선급	공통(40%)	988	988	988	'18.4월
		후급	공통(40%)	988	988	988	'19.1월
			차등(20%)	864.5	494	123.5	'19.1월

2018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평가기준(평가대상별)

가 총 장

평가영역(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교육	소개			40점											
	강의준비 및 실적	◦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여부 ◦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	◦ 강의계획서(1,2학기) 기간내입력 시 5점 기간내 미입력 시 0점 ◦ 강의평가 점수 = (1학기+2학기)/2	10점											
	비정규 수업 강의실적	◦ 비정규 수업 강의 ◦ 재학생 대상 특강 또는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센터 주관)	◦ 1점/회	10점											
	강의 개선	◦ 센터 주관 연구발표, 교수법 개선 실적 등 -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 5점/건	10점											
	외부평가	◦ 대학기본역량진단 ◦ 기관평가 인증	<table><tr><th>평가등급</th><th>배점</th></tr><tr><td>자율개선</td><td>5</td></tr><tr><td>역량강화</td><td>3</td></tr><tr><td>재정지원제한</td><td>0</td></tr><tr><td>인증 충족 및 유지 시</td><td>5</td></tr></table>	평가등급	배점	자율개선	5	역량강화	3	재정지원제한	0	인증 충족 및 유지 시	5	10점	
평가등급	배점														
자율개선	5														
역량강화	3														
재정지원제한	0														
인증 충족 및 유지 시	5														
연구	소개			20점											
	연구실적물의 양	◦ 연구실적의 양 (논문, 작품 발표회 등)	$= 10\text{점} \times \frac{\text{양 평균 \%}}{130 \%}$	10점											
	연구실적물의 질	◦ 교수업적평가표의 연구실적 질 평가	$= 10\text{점} \times \frac{\text{질 평가점수}}{15\text{점}}$	10점											
학생 지도	소개			40점											
	등록 활동	◦ 신입생 등록활동	<table><tr><th>방문실적</th><th>배점</th></tr><tr><td>5회 이상</td><td>10</td></tr><tr><td>3회 이상 5회 미만</td><td>8</td></tr><tr><td>2회 이상 3회 미만</td><td>5</td></tr><tr><td>2회 미만</td><td>3</td></tr></table>	방문실적	배점	5회 이상	10	3회 이상 5회 미만	8	2회 이상 3회 미만	5	2회 미만	3	10점	총장활동
	방문실적	배점													
	5회 이상	10													
	3회 이상 5회 미만	8													
2회 이상 3회 미만	5														
2회 미만	3														
취업 활동	◦ 졸업생 취업활동	<table><tr><th>방문실적</th><th>배점</th></tr><tr><td>5회 이상</td><td>20</td></tr><tr><td>3회 이상 5회 미만</td><td>16</td></tr><tr><td>2회 이상 3회 미만</td><td>10</td></tr><tr><td>2회 미만</td><td>6</td></tr></table>	방문실적	배점	5회 이상	20	3회 이상 5회 미만	16	2회 이상 3회 미만	10	2회 미만	6	20점	총장활동	
방문실적	배점														
5회 이상	20														
3회 이상 5회 미만	16														
2회 이상 3회 미만	10														
2회 미만	6														
중도탈락률	◦ 학과별 중도탈락(지퇴, 제적 등) 최소화 노력 평정	◦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 5점 $= 5\text{점} \times \frac{\text{전국 중도탈락률}}{\text{학과 중도탈락률}}$	5점												
학생상담 실적	◦ 교수별 재학생 상담 실적 - 진로, 취업 등 학생상담이력 시스템 등록건수	◦ 배정학생당 평균 상담건수(년간) - 4회 이상이면 : 5점 $= 5\text{점} \times \frac{\text{평균상담건수}}{4\text{회}}$	5점												

※ 지표별 평가는 전임교원 평가점수의 평균을 적용한다.

나 전임교원

○ 교육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강의준비 및 실적	-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여부 -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	- 강의계획서(1,2학기) 기간내입력시 5점, 기간내 미입력 시 0점 - 강의평가 점수 = (1학기+2학기)/2	10점											
비정규 수업 강의실적	- 비정규 수업 강의 - 재학생 대상 특강 또는 프로그램 주관(대학 및 센터 주관) ※ 강의수당 지급의 경우는 제외	1점/회	10점											
강의개선	- 센터 주관 연구발표, 교수법 개선 실적 등 -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 교수법 개선 제안 및 개선 증빙 (총장결재)	5점/건	10점											
	- 센터 등 인증 외부기관연수 ※ 교수법 개선 제안 및 개선 증빙 (총장결재) -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취창업정보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 총장 인증 기타 외부기관연수	14시간 이상이면 10점 = 10점 × $\frac{\text{교육 이수시간}}{14\text{시간}}$	10점											
교육역량 강화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내 보직활동_중복 적용 ※ 활동계획서 제출 시 활동 목표 제시 → 실적 달성 평가	산출식 = 20-(순위×0.5-0.5) <table><tr><th>평가항목 (12개월 단위 환산 적용)</th><th>배점</th></tr><tr><td>처·단장</td><td>15</td></tr><tr><td>교수 학습센터장 취창업정보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NCS지원센터장</td><td>10</td></tr><tr><td>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체육부장 사회봉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공공인재반 책임교수</td><td>8</td></tr><tr><td>신문사 및 방송사 주간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장</td><td>4</td></tr></table>	평가항목 (12개월 단위 환산 적용)	배점	처·단장	15	교수 학습센터장 취창업정보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NCS지원센터장	10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체육부장 사회봉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공공인재반 책임교수	8	신문사 및 방송사 주간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장	4	20점	
평가항목 (12개월 단위 환산 적용)	배점													
처·단장	15													
교수 학습센터장 취창업정보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NCS지원센터장	10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체육부장 사회봉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공공인재반 책임교수	8													
신문사 및 방송사 주간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장	4													
대학 외부평가 활동실적	- T/F팀 활동실적 - T/F팀 : 구조개혁평가, 기관인증평가, 대학발전, 특성화, 총장 인증 등	- T/F팀 참여실적 - 팀장 15점, 위원 10점 - 재정지원사업 수행 : 3점	15점											
	- 대학발전 및 평가 기여도 - 실적 증빙 제출 - 평가기관 보고서 등 ※ 강의개선 보고서와 중복 불가	- 평가관련 연수 : 5점/일 - 평가기관 제출용보고서 - 작성 : 15점/건 - 검토 : 5점/건	15점											
	- 대학기본역량진단 - 기관평가 인증	<table><tr><th>평가등급</th><th>배점</th></tr><tr><td>자율개선</td><td>5</td></tr><tr><td>역량강화</td><td>3</td></tr><tr><td>재정지원제한</td><td>0</td></tr></table> <table><tr><td>인증 충족 및 유지 시</td><td>5</td></tr></table>	평가등급	배점	자율개선	5	역량강화	3	재정지원제한	0	인증 충족 및 유지 시	5	10점	
평가등급	배점													
자율개선	5													
역량강화	3													
재정지원제한	0													
인증 충족 및 유지 시	5													

※ 감점(20점) :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참가 유도

평가항목	배점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 및 센터 주관 참여실적 - 교수회, 설명회, 발표회, 워크숍 등	불참 : -2점/회

○ **연구영역** ※ 연구영역이 0점일 경우, 지급된 연구영역 선급금 환수 및 후급금 미지급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연구실적물의 양	◦ 연구실적의 양 (논문, 작품 발표회 등) ※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	= 30점 - (순위×1점 - 1점) * 순위 : 연간 인정합산율 합계 순	30점															
연구실적물의 질	◦ 교수업적평가표의 연구실적 질 평가	= 30점× $\frac{\text{질 평가점수}}{15\text{점}}$	30점															
학술활동	◦ 학회 활동실적 평정 - 학회활동 증빙 서류 ※ 단순참가 불가(좌장 및 논문발표 등 역할 수행 시)	◦ 산출식 = 20-(순위×0.5-0.5) <table><tr><th>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학회지 논문심사위원, 학술대회발표논문심사위원</td><td>3점</td></tr><tr><td>국제학술회의 또는 전국규모 국내학술회의 초청 강연, 좌장, 논문발표, 사회, 토론</td><td>3점</td></tr></table>	평가항목	배점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학술대회발표논문심사위원	3점	국제학술회의 또는 전국규모 국내학술회의 초청 강연, 좌장, 논문발표, 사회, 토론	3점	20점									
평가항목	배점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학술대회발표논문심사위원	3점																	
국제학술회의 또는 전국규모 국내학술회의 초청 강연, 좌장, 논문발표, 사회, 토론	3점																	
외부 연구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기술 이전 실적 / 수탁액 - 활동실적이 없을 시 0점 - 지식재산권은 대학이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한함	◦ 산출식 = 20-(순위×0.5-0.5) - 특허 및 연구 <table><tr><th>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국제특허(지적소유권) 등록(개인)</td><td>2점</td></tr><tr><td>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개인)</td><td>1점</td></tr></table> ※ 특허가 기술이전으로 연계된 경우 건당 1점씩 가점 - 수탁액 <table><tr><th>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3천만원 이상</td><td>3점</td></tr><tr><td>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td><td>2점</td></tr><tr><td>2천만원 미만</td><td>1점</td></tr></table> ※ 산학협력단 간접비 편성 여부	평가항목	배점	국제특허(지적소유권) 등록(개인)	2점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개인)	1점	평가항목	배점	3천만원 이상	3점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점	2천만원 미만	1점	20점	
평가항목	배점																	
국제특허(지적소유권) 등록(개인)	2점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개인)	1점																	
평가항목	배점																	
3천만원 이상	3점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점																	
2천만원 미만	1점																	

○ **학생지도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등록활동	- 신입생 등록활동 - 학과별 등록률	= {30-(순위*1점 -1점)}*학과등록률 순위 : 신입생 등록률 향상을 위한 출장 및 입시박람회, 입시설명회 등 행사참가실적 횟수(교학처인증)	30점	
취업활동	- 교수별 취업활동 - 학과별 취업률	- 학과취업률75%이상:15점 - 학과취업률70%이상~75%미만:10점 - 학과취업률60%이상~70%미만:5점 - 학과취업률60%미만 : 0점 = 15점-(*순위×0.5-0.5) *순위 : 취업활동횟수(취창업정보센터인증)	30점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지퇴, 제적 등) 최소화 노력 평정	◦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 30점 = 30점 × $\frac{\text{전국 중도탈락률}}{\text{학과 중도탈락률}}$	30점	
학생상담 실적	- 교수별 재학생 상담 실적 - 진로, 취업 등 학생상담이력 시스템 등록건수	◦ 배정학생당 평균 상담건수(년간) - 4회 이상이면 : 10점 = 10점 × 평균상담건수/4회	10점	

※ 동점자 발생 시 ①등록활동 ②취업활동 ③중도탈락률 ④학생상담건수 순에 따라 순위 산정

다 조 교

○ 학생지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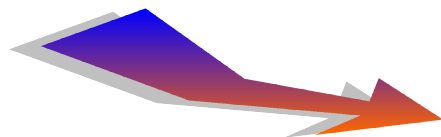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신입생 등록률	◦ 학과별 신입생 등록실적	◦ 학과등록률100%:30점 ◦ 학과등록률90%이상~100%미만:20점 ◦ 학과등록률80%이상~90%미만:10점 ◦ 학과등록률80%미만:0점	30점	
취업률	◦ 학과별 취업실적	◦ 학과취업률75%이상:30점 ◦ 학과취업률70%이상~75%미만:20점 ◦ 학과취업률60%이상~70%미만:10점 ◦ 학과취업률60%미만:0점	30점	
중도탈락률	◦ 중도탈락(자퇴, 제적 등) 최소화 노력 평정	◦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 30점 = 30점 × $\frac{\text{전국 중도탈락률}}{\text{학과 중도탈락률}}$	30점	
학생상담 실적	◦ 교수별 재학생 상담 실적 - 진로, 취업 등 학생상담이력 시스템 등록건수	◦ 배정학생당 평균 상담건수(년간) - 4회 이상이면 : 10점 = 10점 × 평균상담건수/4회	10점	

* 행정조교는 평균 배점을 적용한다.

2018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기준 및 대책

구 분	기준(사례) 설명
전액환수	- 활동계획서 제출 이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실적보고서 상 증빙서류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선급금을 지급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없이 본인의 원 또는 징계에 따른 면직처분(해임 또는 파면)을 받은 경우
환수유예	-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재직 중 사망 또는 당연 퇴직한 경우



환수대책 (미 반납자)	환수명령을 받은 교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금액을 완납 시까지 비용 지급 중지 ⇒ 다음연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
-----------------	---

붙임: 1-3

2018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계획서(서식)

평가대상 (선택)	총 장	()	평가영역 (선택)	교육	()
	전임교원	()		연구	()
	조 교	()		학생지도	()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위/급			핸드폰	
	성 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평가지표	활동 계획 내용	배점
합계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영역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4

2018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보고서(서식)

평가대상 (선택)	총 장	()	평가영역 (선택)	교육	()
	전임교원	()		연구	()
	조 교	()		학생지도	()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위/급			핸드폰	
	성 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평가지표	활동 실적 내용				점수	증빙번호
학술활동	업 적 명	학회명	기간	증빙번호		
외부연구	사 업 명	사업비	선정일	증빙번호		
합계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영역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 심사위원회 구성: 11명

- 위원장(당연직) : 교학처장
-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 위촉직 위원 : 7명(전임교원 및 조교, 외부위원 2명 포함)

[위원현황]

당연직	위촉직	구분	내·외부	비 고
교학처장	박 욱 연	교원	내부	
	김 윤 래	교원	내부	
사무국장	조 현 정	교원	내부	
	김 재 원	교원	내부	
기획홍보처장	원 영 광	조교	내부	
	박 영	교수	외부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정 맹 식	교수	외부	강릉영동대학교

[위원 임기]

- (당연직) 보직·재임기간, (위촉직) 1년 / 연임 가능
- 위원 본인 관련 심사 시 제척, 의결 불가

[심사위원회 운영]

- (소집) 위원장,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

-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평가)
- 활동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허위·부당한 비용 수령에 따른 환수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관련법규 및 교육부 지침 주요내용(요약)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
 - 이전 회계연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결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
 -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 각 영역별 지급기준 마련
 - 계획서 상의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
 - 매년도 지급계획 수립, 공개(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개인별 지급 명세 관리, 부당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 조치 마련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이드라인('17.1월)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 통합·운영
 - 교육부,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결과 등 제도 개선사항 준수
 - 일부 선급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 가능
 -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
 - 종전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예산 총액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기 위한 단가 조정 불가